

# 東北亞地域 國際漁業協力體制의 構築과 運營方向\*

崔正鈞\*\*·崔宗和\*\*

## Establishment and future prospects of new international fisheries regime in Northeast Asian region

Choe, Jung-Yoon · Choi, Jong-Hwa

目 次

I. 머리말	IV. 새 漁業協定體制의 법적 성격
II. 韓-中-日 漁業關係	V. EEZ 시대의 東北亞地域 國際漁業 協力 方向
1. 韓-日 漁業協定の 구성과 특징	1. 國際協力에 관한 海洋法原則
2. 韓-中 漁業協定の 구성과 특징	2. 重疊水域의 運營方案
3. 日-中 漁業協定の 구성과 특징	3. EEZ 相互入漁制度의 현황과 전망
III. 기타의 漁業關係	4. 多者間 漁業協力體制의 구축
1. 日本-러시아 漁業協定	VI. 맺음말
2. 韓國-러시아 漁業協定	
3. 北韓-日本의 漁業關係	

### I. 머리말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주변 수역의 어장 이용과 관리는 주로 한-중-일 3국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그러나 주변 3국은 지리적 근접성에 기인한 정치·경제 분야의 역사적 특수관계로 인하여 어업자원 보존에 관한 상호협력보다는 자원의 경쟁적 개발과 이용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은 1980년대 중반까지 막강한 해양력을 배경으로 하여 어업 분야에 있어서 주변 연안국들에게 항상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 각국의 해양 관할 정책은 일차적으로 對日防禦的 차원에서 성립되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국제어업관계도 주로 일본을 축으로 하여 형성되어 온 것이 특징이다.<sup>1)</sup>

\*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동북아시아의 어업정책 분석과 효율적인 인력 및 어장이용방안"의 일부임.  
 \*\* 부경대학교 해양산업정책학부 교수.  
 1) Tsuneo Akaha, "Fishery Relations in Northeast Asia",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ast Asia*,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1996.

그러나 근년에 와서 한국과 중국의 어업기술이 발달하고, 어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국민들에 의한 어업활동의 범위는 연안으로부터 근해어장으로 급속히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각국 어민의 경쟁적 조업으로 인하여 마침내 어업자원의 심각한 감소현상이 초래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7년부터 역내 국가들은 200해리 EEZ(exclusive economic zone) 또는 EFZ(exclusive fishery zone)를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에 중국이 마지막으로 EEZ를 선포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은 현재 완전한 EEZ 체제로 전환되었다.<sup>2)</sup>

이와 같이 동북아지역의 각 연안국들이 해역관리체도를 EEZ 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주요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폐쇄해인 동해, 황해, 동중국해는 각 연안국들이 200해리까지의 EEZ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해역의 폭이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그 사이에는 公海(high sea)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EZ 경계를 획정(delimitation)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됨으로써 여러 곳에 重疊水域(overlapping zone)이 생겼다.<sup>3)</sup>

둘째, 과도어획(overfishing)과 어장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고갈 위기에 처한 어업자원의 상태를 회복하는 문제와 자원의 국가간 적정배분 문제 등은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즉, 전통적으로 근해어장을 공동 이용해 온 각 연안국들의 어업에 관한 이해관계를 일시에 조정하여 개편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서 EEZ 체제 정착 초기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당면한 중요 과제이다.<sup>4)</sup>

셋째, 유엔 해양법협약 제6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EEZ 경계왕래자원(transboundary fish stocks)의 보존·관리를 위한 공동규범을 마련하고, 그에 관하여 각국이 협력해야 하는 것은 쌍무적 어업관계 정착 이후 다자간에 해결해야 할 추가적 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EZ 체제에 맞추어 새로이 성립된 한-중-일 어업관계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가능한 당면과제 해결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동북아지역 각국의 EEZ 선포 상황은 다음과 같다.

- ① 1977. 3. 1; 소련의 EFZ 선포 ⇒ 1984. 2. 28 EEZ로 변경
- ② 1977. 6. 21; 북한의 EEZ 선포(군사경계수역 설정)
- ③ 1977. 7. 1; 일본의 EFZ 선포(한국과 중국에 적용 유보) ⇒ 1996. 7. 20 EEZ로 변경
- ④ 1996. 8. 8; 한국의 EEZ 선포
- ⑤ 1998. 6. 26; 중국의 EEZ 선포

3) 동북아지역의 對向國 및 隣接國 사이에는 9개소의 해양경계에 합의해야 할 곳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계만이 1985년에 획정되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74년에 부분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을 뿐이다 (Lewis M. Alexander,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Maritime Boundary Disputes Involving Korea, Japan, and China", *Marine Policy and the Korean Economy*, The 1st Annual Korea-US Marine Policy Forum, KMI, 1998).

4) Mark J. Valencia, *A Maritime Regime for Nor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248~252.

## Ⅱ. 韓-中-日 漁業關係

### 1. 韓-日漁業協定の 구성과 특징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체결한 최초의 어업협정이었던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국제법적 배경은 1958년의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체제 하에서의 공해자유원칙에 충실한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양국의 어업분야 과거사 청산과 더불어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정치적 의미도 내포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협정에 대한 양국의 기대와 일차적 목적은 각기 상이하였는데, 한국으로서는 일본에 의한 연안자원의 침탈을 방지하는 것이었고, 일본으로서는 평화선을 철폐하고 공해어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은 큰 변경없이 시행되어 오다가, 1980년 10월부터는 북해도와 제주도 근해에서의 조업 자율규제 조치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1996년에 양국은 각각 EEZ를 선포함으로써 그 체제에 부합되는 개정 협정이 1998년 11월 28일 서명되고, 1999년 1월 22일 발효됨으로써 양국은 새 협력체제를 갖추게 되었다.<sup>5)</sup>

개정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전문 및 17개조의 본문과 2개의 부속서, 그리고 합의의사록과 양측 외교부장관 서한 등의 부속문서로 구성된다. 먼저 협정의 전문(前文)에 기술된 기본이념과 목적을 살펴보면,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와 최적이용을 도모하고, 양국간의 전통적 어업분야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며, 유엔 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① 새 협정은 한-일 양국의 EEZ를 협정수역으로 하며(제1조),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의 EEZ에서 타방 계약국 국민의 어업활동<sup>6)</sup>을 일정 조건하에서 상호 허용한다(제2조~제6조). 그리고 1974년의 「한-일 양국 인접대륙붕 북부구역 경제획정협정」<sup>7)</sup>에 의하여 기합의되었던 대륙붕 경계선을 동시에 EEZ 경계로 사용함으로써 동해 남부와 대한해협 및 그 남부 수역에서는 해양경계에 잠정 합의한 셈이다(제7조). 그러나 동해 중앙부와 제주도 남부 수역에서는 EEZ 경제획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쌍방의 주장이 중복되는 두 군데 중첩수역에 대하여 각각 일정한 범위의 이른바 中間水域(neutral zone)을 두기로 하였다(제9조).<sup>8)</sup>

5) 崔宗和, 「새 한-일어업협정의 구성과 법적 성격」, 「수산경영논집」, 제29권 2호, 1998.

6) 「어업활동」이라 함은 어업과 어업에 관련된 탐색·잡어·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등에 관련되는 행위를 말한다(「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4호).

7) 1974. 1. 30 서명, 1978. 6. 22 발효.

8) 이른바 중간수역은 한-일어업협정 제8조에 의하여 EEZ 어업제도에 관한 규정(제2조~제7조)이 타방 당사국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역일 뿐이며, 협정상 공식명칭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간수역이라 칭하는 반면, 일본은 잠정수역으로 칭한다. 여기서 중간수역의 문언적 의미는 지리적·제도적으로 양측 EEZ의 중간이라는 의미이고, 잠정수역이라 함은 양국간의 EEZ 경계가 확정되지 못한 수역이라는 의미일 뿐, 그 이상의 특별한 법적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이 굳이 중간수역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일-중어업협정 및 한-중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의 법적 성격이 일종의 공동관리수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개념을 배제함과 동시에 분명한 차별성을 들이므로써 영토에 대한 권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lt; 표 1 &gt; 1965년 한-일어업협정과 1998년 한-일어업협정의 기본구조 비교

항 목	1965년 협정	1998년 협정
1) 협정의 기본이념	①공해자유원칙의 존중 ②어업자원의 MSY 유지 ③분쟁예방과 상호협력	①유엔 해양법협약 정신 존중 ②자원의 보존·관리·최적이용 ③어업질서 확립·협력관계 발전
2) 국제법적 배경	1958년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협약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3) 협정수역	공해(공동규제수역/공동자원조사수역)	EEZ 및 2개의 중간수역
4) 전관수역 범위	어업수역(12해리)	영해(12해리) 및 EEZ
5) 어업활동의 형태	공동규제수역 공동조업(연 15만톤)	①EEZ 상호입어 허용 ②중간수역 기존질서 유지
6) 어업활동 규제근거	어업협정	어업협정 및 EEZ 관련 국내법
7) 관할권 행사방식	선적국주의(기국주의)	①EEZ ; 연안국주의 ②중간수역 ; 선적국주의
8) 어업공동위원회 권능	권고권	권고권 및 결정권(남부 중간수역)
9) 분쟁 해결절차규정	외교교섭과 중재절차	외교교섭과 중재절차
10) 유효기간	5년⇒일방 종료통고 1년 후 종료	3년⇒일방 종료통고 6월 후 종료
11) 부속문서	①부속서 ; 공동규제수역 규제조치 ②직선기선 사용에 관한 교환공문 ③제주도 양측수역 관련 교환공문 ④어업협력에 관한 교환공문 ⑤어선표지에 관한 교환공문 ⑥어업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⑦조업안전과 질서유지 왕복서한 ⑧조업자율규제 정부간 합의(1980)	①부속서 I ; 해양경계획정교섭 계속, 중간수역의 성격 ②부속서 II ; 양국 EEZ의 범위, 유보수역 설정 ③합의의사록 ; 동중국어장 이용 협력 ④양측왕복서한 ; 준범어업이행 약속 어획할 당량 관련사항

② 양 체약국은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권고적 권능을 갖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제12조),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더 이상의 절차는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제13조).

③ 부속서 I 에서는 조속한 EEZ 경계획정을 위하여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교섭을 계속할 것과, 동해 및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를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부속서 II 에서는 동해와 제주도 남부의 중간수역을 각각 양 체약국의 EEZ로 간주하며, 그 수역에서는 자국의 EEZ 관련 법령을 타방 체약국 국민과 어선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④ 합의의사록에서는 동중국해에서의 원활한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양 체약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또한 양측 외교부장관 서한을 통하여 각각 자국의 국민과 어선이 준범어업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일본측 서한에서는 한국 국민과 어선의 일본 EEZ 내 입어 허용량 할당 내역 즉 전통적 어업실적 인정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⑤ 이 협정은 발효 후 3년간 효력을 가지며, 어느 일방 체약국의 협정 종료의사를 표시하는 서면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6월 후에 종료하지만, 그러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제16조). 그리고 이 협정의 발효일인 1999년 1월 23일을 기하여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은 효력이 종료되었다(제17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의 새 한-일어업협정의 특징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양 체약국은 일정

한 범위의 EEZ를 각각 설정하고,<sup>9)</sup> 그 수역에서는 당해 연안국이 어업자원의 보존·관리상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沿岸國主義), 쌍방간의 전통적 어업실적을 인정하여 1999년에는 한국에 대해 약 15만톤, 일본에 대해 약 10만톤의 범위에서 상호입어를 허용하되, 3년 후에는 그 허용량이 동등하게 되도록 조정한다.<sup>10)</sup>

둘째, 동해와 제주도 남부의 일정 범위에 중간수역을 두어 기존의 어업질서를 유지하되(船籍國主義), 동해 중간수역은 공해적 성격의 수역으로 하고,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으로 한다. <표 1>은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과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의 기본구조를 주요 내용별로 대비한 것이다.

## 2. 韓-中漁業協定の 구성과 특징

한국과 중국은 황해를 사이에 둔 對向國(opposite states)임과 동시에 동중국해어장의 공동이용국이지만,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어업관계를 가져본 바가 없었고, 1950년에 중국이 선포했던 機船底引網漁業禁止線이나 1952년에 한국이 선포했던 平和線을 상호 공식인정하지 않는 바탕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해 왔다. 그러다가 1992년 8월 양국간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중국의 어업세력이 팽창함에 따라 최근에는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국 연안에서의 중국 어민의 어업활동이 월등하게 활발한 양상으로 변천되었다.

그리고 양국은 국교수립 이전부터 민간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왔던 바, 1989년 12월에 한국의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중국의 황해어업협회 사이에 어선 긴급피난 및 안전조업과 해상사고 처리에 관한 민간협정으로 「어선 해상사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한-중 양국은 국교수립 이후 6년간에 걸친 어업협정 체결 교섭을 진행해 온 결과 1998년 11월 11일경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안)에 가서명하였다.<sup>11)</sup> 양국간에 처음 체결된 이 어업협정은 전문 및 16개조의 본문과 2개의 부속서, 그리고 양해각서로 구

<표 2>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어선의 상대방 수역 침범조업 단속 상황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한국어선의 중국영해 침범 피납 척수	·	·	8	1	4	2	-	4	
중국어선의 한국 수역 침범 나포 척수	영해 침범	15	17	17	45	45	39	31	60
	특정금지구역 침범	·	·	·	·	·	·	8	20
계	15	17	17	45	45	39	39	8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업무자료, 2000.

9) 동해에서는 양국 EEZ의 범위의 기준을 領海基線으로부터 35해리로 합의하였다.

10) 1999년과 2000년도 한-일 양국 EEZ 상호 입어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일본 EEZ 내에서의 한국어선 입어허용량 : 1999년~149,218톤(1,387척), 2000년~130,197톤(1,487척)

한국 EEZ 내에서의 일본어선 입어허용량 : 1999년~93,773톤(1,276척), 2000년~93,773톤(1,287척)

11) 가서명(initial)의 법적 의미는 조약 체결절차 중 교섭에 의하여 조약문이 채택된 다음, 정식서명에 앞서서 행하는 조약문 인증절차이다. 그리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서명(signature), 조건부서명(signature ad referendum), 가서명(initial)에 의하여 조약문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타방 교섭국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약문 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0조<a>)

성된다. 한-중어업협정(안)은 그 전문에서 기본이념과 목적으로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 정상적인 어업질서 유지, 어업분야 상호 협력 강화 등 세 가지를 명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협정수역은 양국이 합의하는 일정한 범위의 두 나라 EEZ로 하고(제1조),<sup>12)</sup> 그 수역에서의 상호 입어에 관한 기본원칙 및 절차와 조건, 그리고 협정 위반에 대한 단속의 연안국주의를 규정함으로써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명기하였다(제2조~제6조, 부속서 I). 여기서 중국의 EEZ는 황해와 동중국해의 중국 EEZ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EEZ 경계 획정시까지 잠정적인 조치로서 황해의 일정 범위에 대하여 暫定措置水域(제7조)과 그 수역 양측에 過渡水域(제8조)을 둔다. 이들 수역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한 입법적 관할권은 어업위원회를 통하여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집행적 관할권은 선적국주의에 의한다. 그리고 과도수역은 잠정조치수역과 EEZ의 완충수역 성격을 띠며, 상대방 체약국의 과도수역에 대한 어업활동을 점진적으로 상호 감축 조정함으로써 협정 발효 4년 후에는 양측의 EEZ로 편입되는 수역이다.

③ 한국의 특정금지구역, 양국의 저인망어업금지구역, 중국의 금어기 실시구역 등과 같이 잠정조치수역의 이북과 이남에 위치한 일부 특수수역에 대하여는 현행의 어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자국 법령을 타방 체약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하되(제9조), 연안국이 현재 시행 중인 어업에 관한 규제법령을 상호 존중하기로 하였다(양해각서).

④ 정상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해상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양 체약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제10조),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문제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제11조, 부속서 II).

⑤ 협정의 이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양 체약국 정부에 권고하며,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조치 결정권을 갖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제13조).

⑥ 이 협정의 최초 유효기간은 발효 후 5년으로 하고, 그 후에는 어느 일방이 종료의사를 서면통고한 1년 후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은 계속된다(제16조). 그리고 이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해양법상의 제반 사안”은 구체적으로 EEZ 및 대륙붕 등의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문제, 직선기선 문제, 해저광물 개발 등 어업 이외의 사항들을 지칭하는 것이다(제14조).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한-중어업협정의 특징은 원천적으로 한국 연안에 대거 진출하여 어업활동을 자행해 온 중국 어업세력을 축출하고 황해와 동중국해 어장의 어업자원을 보존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이 발효되면 새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한국의 수산업이 위축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대일본 관계와 비교하여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 3. 日-中漁業協定の 구성과 특징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1955년에 민간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가 1975년에 정부간의 공식관계인

12) 황해에서의 양국 EEZ 범위는 領海基線으로부터 대략 60해리 정도가 된다.

일-중어업협정으로 발전되었고, 이것이 최근까지 황해와 동중국해에 있어서 양국 어업관계를 규율해 왔다. 1975년 8월 15일 체결된 일-중어업협정은 중국이 타국과 체결한 어업협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1955년의 민간어업협정을 변형시킨 것이었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양국은 협정수역 내에서의 어업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목표로 어업활동을 규제하고, 협정위반 어선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船籍國主義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협정 제3조). 또한 쌍방은 자국 어선에 대하여 황해와 어업활동의 안전 및 질서유지, 그리고 해상사고의 원만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호간에 타방 체약국 어선의 긴급피난권을 인정하였다.

이 협정을 통하여 중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00~150해리의 수역에 걸쳐 7개의 休漁區와 6개의 保護區, 그리고 출력이 600마력을 초과하는 기선저인망어선의 어업금지구역을 각각 설정함으로써 해양관할권의 확대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1975년의 일-중어업협정 역시 주로 중국 근해의 황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일본 어선의 어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과 그 성격이 유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은 1996년 8월 이후 EEZ 체제에 부합되는 어업관계로의 변경을 위한 교섭의 결과, 1997년 11월 11일 개정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개정된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전문 및 14개조의 본문과 2개의 부속서, 그리고 합의의 사록과 양측 외교부장관 서한 등의 부속문서로 구성된다.

① 먼저 협정의 전문에 기술된 기본이념과 목적은 양국간의 전통적인 어업협력관계를 고려하고, 국제법 발전에 따른 새로운 어업질서의 확립과, 어업자원에 대한 보존 및 이의 합리적 이용과 정상적인 어업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② 이 협정은 일-중 양국의 EEZ를 협정수역으로 하며(제1조), 공동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 EEZ에서 타방 체약국 국민의 어업활동을 일정 조건 하에서 상호 허용한다(제2조~제5조). 그리고 북위 27도와 북위 30도 40분 사이의 해역에 대하여 양국 연안으로부터 52해리까지는 양측의 EEZ를 각각 설정하고, 그 바깥 수역은 暫定措置水域으로서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어업자원을 공동 관리하되(제7조), 북위 27도 이남의 동중국해와 동경 125도 30분 이서의 남중국해 수역 중 중국의 EEZ 바깥 수역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업질서를 유지한다(제6조).

③ 양 체약국은 자국 EEZ에서 타방 체약국 어선이나 국민이 조난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긴급피난을 상호 허용한다(제9조).

④ 양 체약국은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잠정조치수역의 어업자원 공동관리에 대한 결정권과 기타의 권고권을 갖는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제11조).

⑤ 부속서 I 은 구체적인 입어허가 및 입어절차를, 부속서 II 는 긴급피난에 관한 사항을, 합의의사록은 해양경계 획정 교섭의 계속에 관한 쌍방의 의향을 각각 규정하였다. 그리고 양측 외교부장관 서한은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타방 체약국 국민에 대한 자국 법령의 적용을 유보하기로 하고, 특히 동해와 태평양의 일본 EEZ에서 중국의 오징어 채취기 어업실적을 협정 발효 후 5년간 인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lt;표 3&gt; 1975년 일-중어업협정과 1997년 일-중어업협정의 기본구조 비교

항 목	1975년 협정	1997년 협정
1) 협정의 기본이념	① 황·동중국해 어업자원 보존·이용 ② 정상적인 해상조업질서 유지	① 유엔해양법협약 취지의 신질서확립 ② 어업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 ③ 정상적인 조업질서 유지
2) 국제법적 배경	1958년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협약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3) 협정수역	공해(황해·동중국해 수역)	EEZ, 잠정조치수역, 27도 이남수역
4) 전관수역 범위	중국의 기선저인망어업금지선 내부	영해(12해리) 및 EEZ
5) 어업활동의 형태	7개 휴어구 및 6개 보호구에 대한 기선저인망 어업과 선망어업 규제	① EEZ 상호입어허용 ② 잠정조치수역 기존질서 유지
6) 어업활동 규제근거	어업협정	어업협정 및 EEZ 관련 국내법
7) 관할권 행사방식	선적국주의	① EEZ; 연안국주의 ② 잠정조치수역 등; 선적국주의
8) 어업위원회의 권능	권고권	① EEZ; 권고권 ② 잠정조치수역; 결정권
9) 분쟁해결절차규정	없음	없음
10) 협정의 유효기간	3년 ⇒ 일방의 종료통고 3월 후 종료	5년 ⇒ 일방의 종료 통고 6월 후 종료
11) 부속문서	① 부속서 I; 휴어구 및 보호구 설정 ② 부속서 II; 어선 긴급피난절차 ③ 교환공문; 제1보호구 일본선망금지 ④ 합의의사록; 보호구 최고조업척수 ⑤ 왕복서한; 협정수역에 대한 입장	① 부속서 I; EEZ 상호입어절차 ② 부속서 II; 어선 긴급피난절차 ③ 합의의사록; 경계회정교섭 ④ 왕복서한; 잠정조치수역의 법적용 ⑤ 중국오징어채취기에 관한 일본서한

⑥ 이 협정의 최초 유효기간은 발효 후 5년간이며, 어느 일방 체약국의 협정종료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6월 후에 종료하지만, 그러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제14조).

이상과 같이 일-중어업협정도 주로 동중국해에서 양국이 일정한 범위의 EEZ를 각각 설정하고 그 수역에서의 상호입어를 허용하는 것과, 해양경계 획정원칙에 대한 양측 입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잠정 조치수역을 둔 점, 그리고 센가꾸제도(尖閣諸島, 중국명; 釣魚島)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留保水域(white zone)을 둔 점, 일본 근해해역으로부터 중국의 어업세력을 축출하고자 하는 일본의 정책이 반영되었다는 점 등에 있어서 한-일어업협정이나 한-중어업협정과 유사한 성격의 잠정체제이다.

### Ⅲ. 기타의 漁業關係

#### 1. 日本-러시아 漁業協定

일본과 러시아의 어업관계는 1750년대부터 일본이 쿠릴열도(Kuril Islands)와 캄차카반도(Kamchatka Peninsular) 연안 수역에서 어장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1850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당시 러시아 영해 내에서 어업권을 갖는 일-러어업협정을 체결한 것이 정부간 공식어업관계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당시 소련의 공산정권이 정착한 다음인 1928년에 새로운 일-소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소련 연근해 수역에서의 두 나라 어업실적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소련 근해에서의 조업권을 상실함으로써 어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1956년 3월에 소련이 Bulganin Line을 설정한 후, 동년 5월에 새로운 일-소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에 의거하여 일-소어업위원회는 매년 협정수역에서의 연어 어획 쿼터를 일본에 배정하였으며, 청어와 게에 대하여도 치어 포획금지 및 어구 규제를 단행하였다.

소련은 1977년 3월 어업수역을 설정함과 동시에, 그 수역 내에서 외국인은 쌍무적 어업협정에 의하여 어획 쿼터를 배정받아 조업해야 한다고 선언하고,<sup>13)</sup> 1956년의 일-소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일본 또한 소련을 겨냥하여 1977년 5월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을 공포하고, 200해리 어업수역제도를 12해리 영해제도와 함께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국은 배타적 어업수역 체제에 부합되는 일-소어업잠정협정을 1977년 5월 27일에 체결하였는데,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소련의 어업수역 내에서 일본 어선의 어업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었다. 두 나라는 상대방의 어업수역에서 매년 어획 쿼터를 상호 배정받아 조업하게 되었으나, 협정 체결 후 일본으로서는 어획 쿼터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즉, 종래의 어업협정은 연어, 송어, 게, 청어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였지만, 1977년의 협정에서는 모든 어종에 대하여 쿼터를 배정받게 하였고, 특히 연어와 송어에 대하여는 1978년 4월에 별도로 체결한 일-소어업협력협정 및 「일-소 연어·송어 의정서」에 의거하여 특별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한편, 1977년의 일-소어업잠정협정을 1984년 12월 7일 일-소근해어업협정으로 개정하여 쌍방 EEZ에의 상호입어방식을 유지해 왔는데, 어획 쿼터 배정원칙에 있어서 일본은 實績主義를 주장한 반면에 소련은 等量主義를 고수하였다.

1988년부터는 소련측의 요구로 일본의 공해상 연어·송어 어업 중단에 관한 협상 결과, 1993년부터 이 어업이 전면 금지되었다. 특히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가 점령 중인 쿠릴열도의 4개 도서(에토로푸,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의 12해리 수역 내에서 입어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본 어선의 어업활동을 허용하는 추가 어업협정<sup>14)</sup>을 1998년 2월 21일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두 나라 사이의 영토분쟁을 완화함과 동시에 포괄적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평화조약 체결로까지 진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 韓國-러시아 漁業協定

한국과 구소련은 1990년 9월에 수교한 후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의 결과 1991년 9월 16일 체결된 한-소어업협정이 동년 10월 22일 발효됨으로써 본격적인 정부간 어업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의 당사국이던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 1991년 12월 31일 붕괴됨에 따라, 민스크협

13) 「On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for the Regulation of Fishing in Marine Areas Adjacent to the Coast of the USSR」; Edict of the Presidium of the USSR Supreme Soviet, (Dec. 10, 1976), Art. 3.

14) 일본-러시아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어업분야에 있어서 약간의 협력사항에 관한 협정

정<sup>15)</sup>에 의하여 구소련의 대외관계를 러시아 공화국이 승계하였고, 한-소어업협정도 한국-러시아 어업협정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

전문 및 15개 조문으로 구성된 한국-러시아 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국은 수산업 분야에서 호혜평등의 협력관계를 수립하고(제1조), 북서 태평양의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최적이용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수행하며(제2조), 상호주의원칙에 의한 입어 허용(제3조), 조업선의 법령 준수 의무와 연안국주의에 의한 단속 및 처벌(제4조), 검사 공무원의 상호 승선 조사(제5조), 소하성어류의 어획 금지(제6조), 오호츠크 공해 및 베링 공해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이행 협력(제7조), 어업자원에 대한 과학조사와 정보의 상호 제공(제8조), 어로·양식·가공 분야 합작기업에 대한 지원(제10조), 국제수산기구를 통한 상호 협력(제11조), 어선의 보급 등을 위한 기항 편의 제공(제12조), 어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13조), 타 조약에 대한 각국 입장의 인정(제14조), 5년의 유효기간과 1년씩의 자동연장(제15조) 등이다.

이상과 같은 어업협정을 기본규범으로 하여 두 나라의 어업분야 협력관계는 주로 러시아 EEZ 내의 풍부한 명태자원에 대하여 한국측이 매년 어획 쿼터를 배정받아 입어료를 지불하고 직접 조업하는 방식과 더불어, 합작기업도 경영하여 왔다.

### 3.北韓-日本의 漁業關係

북한이 1977년 6월 21일 EEZ를 선포한 후, 그 수역 내에서 대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어업정책의 기본 방향은 1978년 8월 12일 정무원결정 제160호로 공포하여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sup>16)</sup>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북한이 1977년 8월 동해와 황해에 EEZ와 50해리 군사경계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일본은 종래부터 조업해 오던 기존 어장의 확보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협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7년 9월 평양에서 북한의 동해수산협동연맹과 일본의 일-조어업협의회 사이에 민간 차원의 「일-조어업협력에 관한 잠정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일본 어선의 어업활동 범위를 군사경계수역 외측의 EEZ로 하며, 입어 어선의 규모는 200톤 이하로 하고, 합의의 유효기간은 1977년 7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며, 일본은 북한이 어업기술과 어업기자재를 도입하는 것에 협력한다는 것과, 그 외에 상대측 어선의 안전보장과 긴급구조 등을 규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합의서는 1986년에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 후 1987년 12월부터 1989년 말까지 유효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입어료를 지불하고 조업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즉, 이 합의서에 의거 일본에 대하여 개방하는 어종은 명태, 연어, 오징어, 게 등으로 하며, 두 나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15) Agreement of the Creation of Independent States ; 이것은 1991년 12월 30일 독립국가연합(CIS)의 정상들이 민스크 회의에서 서명한 조약으로서 독립국가연합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것이다.

16) 이 규정은 34개의 조문과 부록(붙임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7년 6월 21일자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공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관하여」를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북한의 EEZ 해양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어업을 대외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어서 명태 외에는 고정된 쿼터를 정하지 않고, 어선의 크기와 척수, 그리고 어기와 어법 등을 규제하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랐다. 1989년 12월에는 일본의 일-조우호의원연맹과 북한의 조-일우호친선협회 사이에 제6차 잠정합의로서 1990년부터 2년간 유효한 「북조선 200해리 경제수역에 대한 양국간 어업잠정합의서」가 동경에서 조인되었고, 1991년 12월에는 이 잠정합의서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하였다. 그러나 1994년 1월 이후에는 잠정합의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없었으므로 현재는 효력이 중지된 상태이다.

#### IV. 새 漁業協定體制의 법적 성격

해역관리제도가 EEZ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는 국제어업관계의 핵심과제는 쌍무적 어업협정에 관한 것과, 다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공통규범에 관한 두 가지이다. 그런데, 일본-러시아 및 한국-러시아 사이에는 이미 EEZ 체제에 기초한 전통적인 어업관계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한-중-일 세 나라는 지리적 근접성과 어업의 상호의존관계를 감안할 때, 새 협정체제에 의하여 각 계약국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리고 비록 각각의 독자적인 어업협정이랄 할지라도 상당 부분은 협정간의 상호보완성 내지 공통규범성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일 3국간에 새로이 체결되거나 개정된 쌍무적 어업협정체제의 법적 성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협정체제는 계약국 쌍방의 어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시적으로 합의한 兩者條約(bilateral agreements)들이다. 그리고 양 계약국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한 계약적 성격의 어업조약이기 때문에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는 그 내용에서 배제된다. 여기서 어업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란 구체적으로 도서 영유권문제, 해양경계 획정문제, 영해기선문제, 대륙붕에 관한 문제, 해저광물자원의 개발문제, 해양 과학조사문제, 해양환경 보전문제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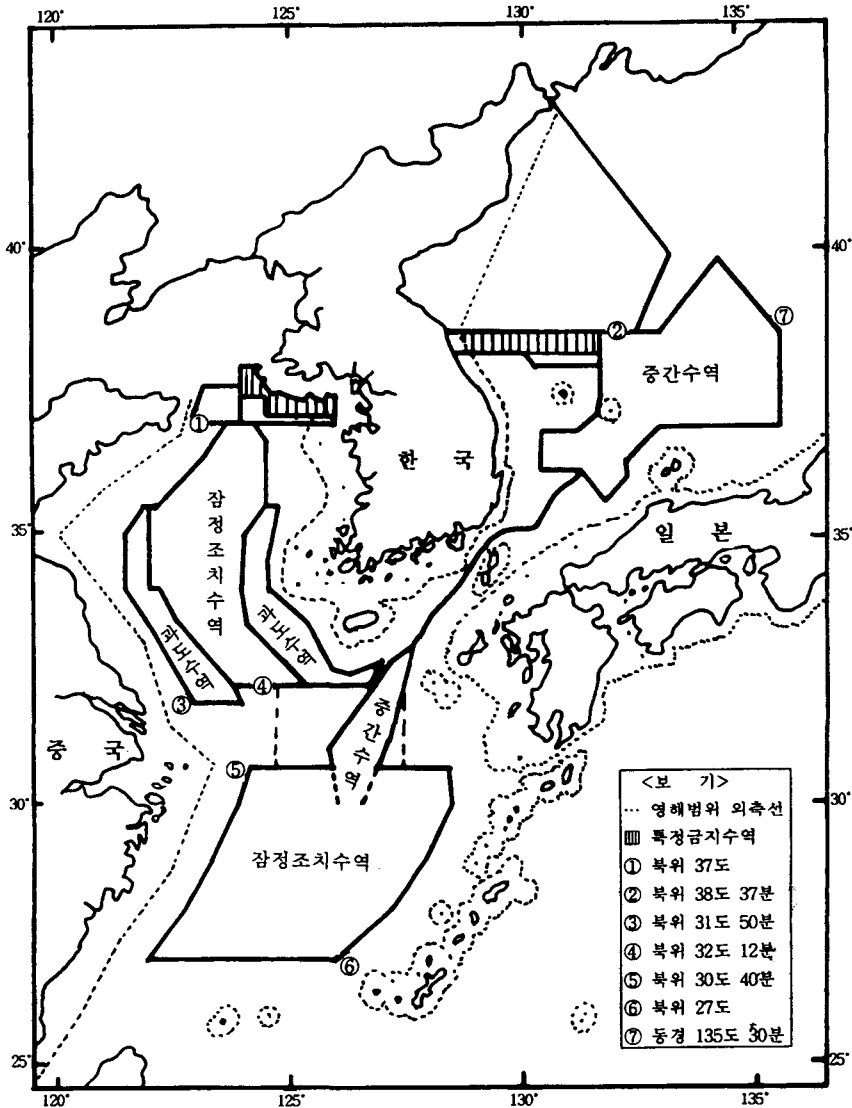
둘째, 이 협정들이 적용되는 수역은 각 계약국의 EEZ이므로, 계약국들의 EEZ 내에서 행해지는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에 관하여 쌍방간에 합의한 조약이다. 따라서, 계약국들의 內水(internal waters)와 領海(territorial sea)에서는 적용이 없으며, 接續水域(contiguous zone)은 어업문제에 관한 한 EEZ에 포함된다. 그리고 한-중-일 세 나라 사이에는 EEZ 이원의 공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해에 대한 적용도 없다.

셋째, 이 협정체제는 한-중-일 세 나라가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들로서 협약의 이념에 기초하여 쌍방간의 국제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분야 협력관계의 유지·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계약당사국 EEZ에 대한 타방 당사국 국민의 입어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서로 허용하는 이른바 相互主義原則에 기초한 어업협력협정들이다. 그리고 양 계약국 EEZ 내에서는 입법 및 집행적 권한 행사에 있어서 이른바 沿岸國主義가 적용된다.

수산경영론집

<표 4> 한-중-일 세 나라 사이의 각 중첩수역의 명칭과 법적 성격 비교

협정명칭	수역의 위치	공식명칭 (km <sup>2</sup> )	추정면적	관할권 행사주체		법적성격
				입법관할권	집행관할권	
한-일어업협정	동해 중간수역	없음	95,775	선적국	선적국	공해적 성격
"	제주도 남부중간수역	없음	26,712	공 동	선적국	공동관리수역
한-중어업협정	황해 잠정조치수역	잠정조치수역	83,489	공 동	선적국	공동관리수역
"	황해 과도수역	과도수역	한국 : 28,926 중국 : 26,367	공 동	선적국	공동관리수역
일-중어업협정	동중국해 잠정조치수역	잠정조치수역	176,335	공 동	선적국	공동관리수역
"	북위 27도 이남 수역	없음		선적국	선적국	공해적 성격



<그림 1> 한-중-일 3국간의 새 어업협정수역 개념도

넷째, 이들 협정은 각 체약국간의 EEZ 경계획정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고, 체약국 쌍방간의 정치·경제·사회적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체결한 잠정적 성격의 어업협정들이다. 그리고 쌍방이 각각 자국의 EEZ인 것으로 주장하는 수역이 중첩됨으로써 생겨난 中間水域, 暫定措置水域, 그리고 過渡水域들은 당해 협정 체약국 쌍방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는 EEZ이기는 하되, 자국의 관련 법령을 타방 체약국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을 유보하는 수역이다. 동해 중간수역을 제외한 여타의 중첩수역에서의 입법적 관할권은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하여 공동으로 행사하고, 어업관리 및 범칙행위의 단속·처벌과 같은 집행적 관할권은 전적으로 선적국이 행사하는 이른바 船籍國主義가 적용된다. 그러나 동해 중간수역과 북위 27도 이남의 수역만은 공동관리의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관할권을 연안국이 행사하기 때문에 공해적 성격의 暫定漁業水域(provisional fishery zone)이다. 각 중첩수역의 명칭과 면적, 법적 성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그리고 <그림 1>은 새 협정체제에 의하여 설정되는 협정수역들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중간수역, 과도수역, 잠정조치수역으로부터 연안국 쪽의 해역은 당해 연안국의 EEZ가 된다.

## V. EEZ 시대의 東北亞地域 國際漁業 協力方向

### 1. 國際協力에 관한 海洋法原則

#### 1) 漁業資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一般原則

EEZ의 어업자원 보존·관리 및 개발·이용에 관하여 연안국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sovcreign right)의 일반적인 내용은 유엔 해양법협약 제61조부터 제73조 사이에 일정한 의무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연안국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 외에 일정한 의무란 연안국이 어종별 TAC(total allowable catch)를 결정할 의무와 함께, 어업자원의 최적 이용목표 즉, MSY(maximum sustainable yield)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수산기구를 통하여 협력할 의무도 부담한다(협약 제61조 1항 및 2항, 제62조 2항).

TAC에서 연안국의 어획능력분(CTH : capacity to harvest)을 공제한 것이 잉여허용어획량(SAC : surplus of the allowable catch)이 되는데, 이 잉여허용어획량에 대하여 관련 어업국의 입어를 허용함에 있어서 연안국은 그것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연안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유엔 해양법협약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주요 내용은 당해 연안국 이익의 중요성과 더불어, 특히 개발도상국과 내륙국 및 지리적 불리국의 이익,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업에 관하여 기득권 있는 국가의 경제적 혼란을 극소화할 필요성 등이다.

연안국이 어업국의 입어를 허가하고 입어허용량을 배분하는 구체적인 규범은 당해 어업국과의 협정에 의해 결정되며, 입어허가의 조건과 입어료 등을 정하는 연안국의 국내 법령과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 입어허용량의 배분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연안국이 어업 이외의 국익에 관한 사항을 개입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유엔 해양법협약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협상 과정

에서는 자연히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개입되는 것이 현실이다.<sup>17)</sup>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건대, EEZ 제도의 기본이념은 어업자원의 보존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공히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업자원에 대하여 연안국에 의한 배타적 보존·관리조치 만으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어업에 종사해 온 국가에 대하여도 해역관리체제의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협약은 이 문제에 관하여 이해관계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 2) 半閉鎖海 共同沿岸國으로서의 協力當爲性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enclosed or semi-enclosed sea)란 두 나라 이상의 해안으로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 바다와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 혹은 대부분이 둘 이상의 연안국 영해나 EEZ로 구성된 만, 내만, 또는 해양을 말한다(협약 제122조).<sup>18)</sup> 현재 지구상에는 26개의 반폐쇄해가 존재하는데, 그 면적은 지구 전체 해양면적의 약 7%에 해당되고, 수심 200m까지의 전 세계 대륙붕의 55%를 차지하며, 상업성 있는 어업의 25% 정도가 여기서 행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황해, 동중국해, 동해, 오호츠크해 등이 대표적인 반폐쇄해들이다.

반폐쇄해는 그 지리적 특성상 해역 연안국간의 해양관할권 조정과 더불어, 그 해역에서의 합리적인 자원 보존·관리 및 개발, 해양 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해양법협약은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공동연안국으로 하여금 해양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적절한 지역기구를 통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당해 해역에서의 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관리·탐사·개발의 조정,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각국의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의 조정, 해양 과학조사 정책의 조정 및 공동 계획의 시행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타 이해관계국 또는 국제기구를 초청하는 것 등에 관한 것이다(협약 제123조).

특히, 황해, 동중국해 및 동해의 연안국들은 이들 해역에서의 각국의 어업관할권을 조정함과 동시에, 어업자원을 보존·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공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중-일 세 나라는 EEZ 설정 후 직접 또는 지역기구를 통하여 경계왕래자원의 보존 및 개발을 조정하고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협약 제63조 1항).<sup>19)</sup>

17) 미국은 1983년의 어업자원보존관리법(MFCMA)에서 어업자원의 보존과 이용 목적 이외의 관련 사항을 참작하여 입어허용량을 배정한다는 명문규정을 둔 바 있다(MFCMA, §201-(e) <Allocation of allowable level>).

18) 알렉산더는 반폐쇄해의 지리적 조건에 관하여 면적은 5만 평방해리 이상이어야 하며, 그 해역의 50% 이상이 육지로 둘러싸이고, 반폐쇄해와 대양을 연결하는 해역의 폭은 반폐쇄해 둘레의 20% 이하이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Lewis M. Alexander, "Regionalism and the Law of the Sea : The Case of Semi-enclosed Se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12-2, 1974, pp. 155~157).

19) 유엔 해양법협약 제63조 제1항은 인접 국가의 EEZ 사이에 공해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계를 회유·왕래하는 자원(경계왕래자원; transboundary stocks)에 대하여는 당해 연안국간의 보존·관리 책임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연안국 EEZ와 인접공해 사이를 회유·왕래하는 자원(경계내의 분포자원; straddling fish stocks)에 대하여는 당해 연안국과 공해어업국 간의 보존·관리 책임을 규정하였다.

즉, 동해와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 생산되는 오징어, 정어리, 조기류, 고등어, 전갱이와 같은 어종은 대표적인 경계왕래자원이므로 이에 대하여 세 나라가 각각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어느 특정한 어종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원 관리상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어업 자원의 관리에 관한 인근국가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高度回遊性魚種(highly migratory species), 海洋哺乳動物(marine mammals), 溯河性魚類(anadromous stocks) 및 降河性魚種(catadromous species)과 같은 특정어종의 자원 관리와 적절한 이용을 위하여서도 국제법 규정에 따라 협력할 의무가 있다(협약 제64~67조).

### 3) EEZ 沿岸國으로서의 責任履行

1970년대 이후 수산물의 세계적인 수요 증대에 따라 주요 어업국들은 어업에의 투자 증대에만 열중한 결과 경쟁적 조업으로 인하여 어업자원이 고갈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고 어업이 직면한 이와 같은 문제는 어느 일부 지역 또는 소수 국가들이 당면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부터였다. 즉, 어업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어업자원을 보존·관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일부 연안국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전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되자 1991년 FAO 수산위원회(COFI)에서는 책임있는 수산업(responsible fisheries) 이행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국제규범 제정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5월 멕시코의 칸쿤(Cancun)에서 개최되었던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FAO로 하여금 책임있는 수산업 실행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칸쿤 선언(Cancu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동년 6월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Agenda 21에서 주요 관심분야로 수용되었다. 그리고 FAO가 마련한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실행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이 1995년 11월 제28차 FAO 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이 규범은 전문과 12개 조항, 8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범의 성격은 법적 구속력 없는 이른바 軟性法(soft law)에 해당되지만, 유엔 해양법협약상 EEZ 및 공해에서의 어업자원 보존·관리분야에 관하여는 강제력을 갖는 부분도 있다. 이 규범의 적용 대상은 전지구적으로 국가와 국제기구, 그리고 모든 수산업 주체를 망라하여 광범위하며,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및 교역 등 수산업 전반에 걸쳐 모든 수산업 주체들이 지향할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기본 지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이 규범의 주된 목적은 책임있는 수산업 활동을 위하여 관련 국제법 규칙에 따른 원칙을 수립하고, 책임있는 어업자원 보존·관리·개발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며, 국제협력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제2조).

그러면 책임있는 수산업의 구체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은 EEZ 제도에 의하여 연안국에게 부여된 EEZ 어업자원에 대한 보존·관리 책임은 물론이고, 그것의 적용범위는 공해에까지 확대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수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 및 개인은 국제규범으로서 확립된 책임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전지구적으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자연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록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책임 개념인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책임정책, 기업인의 책임경영, 어업인의 책임생산과 책임유통의 개념까지 복합되어 있다.<sup>20)</sup> EEZ 체제와 관련하여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책임어업에 관한 일반원칙(제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합리적 자원 이용·관리의 원칙, ② 의사결정 자료 신뢰성의 원칙, ③ 자원관리형 어법 선택의 원칙, ④ 연안생태계의 보존 및 생물종 다양성 유지의 원칙, ⑤ 국가책임 및 국제협력의 원칙, ⑥ 전통어업의 보존 및 어민생계 보장의 원칙, ⑦ 어업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등이다.<sup>21)</sup>

이와 같이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실행규범」은 어업국 뿐만 아니라, EEZ 연안국으로서의 책임이행에 관한 기본원칙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EEZ 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각 연안국들이 그 관할수역에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상응하는 이 규범상의 제반 의무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2. 重疊水域의 運營方案

한-중-일 세 나라 사이의 바다에 생긴 중첩수역들은 이들 국가간의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못한 데에 연유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새 협정체제의 법적 성격은 유엔 해양법협약 제74조 3항이 규정하는 暫定約定(provisional arrangement)이 된다. 잠정약정은 실용적 성격(practical nature)의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잠정약정이 당해 중첩수역의 이용과 관련한 현실문제의 해결수단일 뿐, 영토문제나 최종적 경계획정문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잠정약정은 임시적인 제도로서 중첩수역에서의 자원 개발과 이용에만 한정될 뿐이며, 그 개발활동이 어떠한 형태의 권리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 유엔 해양법협약 제73조 3항의 정신이다.

최종적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중첩수역 운영방식은 留保水域協定(white zone agreement) 방식과 暫定水域協定(gray zone agreement) 방식으로 대별하여 개념화할 수 있다.<sup>22)</sup> 유보수역협정 방식은 사실상의 공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의 어선에 대하여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이고,<sup>23)</sup> 잠정수역협정 방식은 어선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船籍國主義에 의하되, 그 수역의 어업자원에 대한 관리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sup>24)</sup>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일-중잠정조치수역 북쪽과 한-중잠정조치수역 남쪽의 동중국해 일부가 전자에 해당되고, 그 외의 중간수역, 과도수역, 잠정조치수역들은 모두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보수역에서는 공해와 마찬가지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어업활동

20) 崔宗和, 「現代國際海洋法」, 世宗出版社, 1999, p. 339.

21) 이상고, “신해양질서의 어업관리체제와 TAC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 30권 제1호, 1999.

22) Robin R. Churchill, “Fisheries issue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Marine Policy*, vol. 17-1, 1993.

23) White zone agreement의 사례; ① 1977 Agreement Concerning Mutual Fisheries Relations with Protocol Concerning Certain Boundary Questions. ② 1977 Agreement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of the Swedish Fishing Zone and the Soviet Economic Zone in the Baltic Sea.

24) Gray zone agreement의 사례; ① Agreement between Norway and USSR on an Interim Practical Arrangement for Fishing in an Adjoining Area in the Barents Sea of 1988.

② Agreement between Denmark and Sweden Concerning the Extention of the Jurisdiction of Fisheries in the Kattegat of 1977.



이 자행된다면 어업자원의 고갈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동북아시아의 각 중첩수역 운영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해 중간수역이 생성된 직접적인 원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이 경합되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의 "분쟁없음"이라는 일관된 정책의 타당성이 확고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영유권에 대한 양측 주장의 불일치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새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 자체는 물론이고, 장래의 해양경계 획정 교섭과정에도 추호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히 동해 중간수역의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수역에 대한 공동관리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의도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양 당사국 어업인 대표로 구성되는 민간협의기구를 어업공동위원회와 별도로 설립하고, 그 기구로 하여금 중간수역 어업자원의 보존·관리문제를 일차적으로 협의하여 자율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황해에 설정되는 한-중과도수역은 양국 EEZ와 잠정조치수역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완충수역이다. 이 수역의 운영은 그 수역이 양측의 EEZ로 편입되기까지 상호 협의하여 어업을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EEZ 어업자원 보존·관리 측면에서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어업활동을 여하히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새 어업협정체제에 의하여 설정된 한-일간의 중간수역에 대하여는 중국이 비체약국이고, 한-중간의 황해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에 대하여는 일본이 비체약국이며, 일-중간의 동중국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하여는 한국이 비체약국 지위에 놓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자간에는 상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 즉, 한국에게는 동중국해 일-중잠정조치수역 입어문제가 생기고, 중국에게는 한-일중간수역 입어문제가 생기며, 일본에게는 황해의 한-중잠정조치수역 또는 과도수역 입어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하여 사안별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일-중어업협정 발효에 관한 양국 교섭과정에서 이 협정의 시행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3. EEZ 相互入漁制度의 현황과 전망

EEZ 체제의 정착 초기에 상호입어를 허용하는 것은 해역관리체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해양법상 인정된 제도이며, 특히 동북아시아와 같이 어업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해역일수록 그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먼저 한-일간에는 1999년부터 개정 협정 발효와 더불어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은 내용의 상호입어제도를 시행 중이다. 첫째에는 한국과 일본의 상대방 국가 EEZ에서의 허용어획량 비율을 대략 3:2로 하였지만, 2000년과 2001년에는 그 격차를 점차 축소시켜 2002년에 동등량이 되도록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허용어획량 기준의 상호입어제도는 원칙적으로 TAC에 기초하여 성립되는 것이다.<sup>25)</sup>

25) 협정 발효 첫해인 1999년도의 입어허용량 소진률은 한국이 18.6%였고, 일본이 23.6%였다.

&lt;표 5&gt; 1999년과 2000년도 한-일 양국 EEZ 상호입어 허용에 관한 합의 내용

일본 EEZ 내에서의 한국어선 입어허용 내용					한국 EEZ 내에서의 일본어선 입어허용 내용				
구 분	입어척수		입어허용량(톤)		구 분	입어척수		입어허용량(톤)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합 계	1,387	1,487	149,218	130,197	합 계	1,276	1,287	93,773	93,773
대형선망어업	187	199	70,000	70,000	대·중형선망어업	254	231	76,987	76,987
오징어채낚기어업	553	443	20,335	12,230	오징어채낚기어업	243	176	4,126	3,855
대게저인망어업	-	10	500	500	붕장어통발어업	1	1	10	2.5
대형트롤어업	84	52	4,897	6,900	이서저인망어업	46	44	7,323	7,320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	55	30	2,873	*	근해저인망어업	61	60	597	597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	78	82	*	*	고정식자망어업	15	15	200	200
중형기선저인망어업	20	20	4,000	3,000	복어연승어업	198	146	1,408	1,372
자망어업	6	19	900	900	끌낚시어업	398	595	886	1,407
연승어업	283	323	1,998	4,900	가다랭이채낚기어업	38	2	1,196	1,196
외줄낚시어업	3	129	39	1,410	외줄낚시어업	6	6	20	11
붕장어통발어업	34	26	1,500	1,500	만세기어업	11	10	500	500
골뱅이통발어업	5	5	250	250	대게통발어업	-	-	211	111
기타통발어업	25	23	613	700	복어반두어업	1	-	300	200
복어연승어업	-	123	200	6,000	도미선망어업	3	-	8	11
갈치채낚기어업	18	8	200	200	청새치돌붕어업	1	1	0.5	0.5
꽁치붕수망어업	30	29	25,613	15,870					
북해도트롤어업	6	0	15,300	0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	30	-	900					

비고 : \* 는 바로 뒷칸의 허용량에 합산되어 있음을 의미함.

그러나 현재 중국은 TAC 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중어업협정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상호입어 방식을 주로 어선의 척수를 기준으로 하되 어획량 기준을 부가적으로 시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비율은 대략 3 : 2로 하였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어획량 기준의 상호입어 허용제도를 시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중국측이 제시하는 과거 어업실적의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상호 공식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상호입어 허용방식은 어선 척수를 주된 기준으로 하되, 그 비율이 단번에 동등한 조건으로 합의되기 곤란하다면, 초기에는 다소의 차등비율로 시작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동등 수준이 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른바 等隻主義를 도입·시행하는 경우에 유념해야 할 것은 업종별 어선의 크기 상한을 반드시 규정해야 하며, 또한 어획물 운반선을 이용한 어획물 海上轉載는 어업자원 보존 목적상 금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궁극적으로는 어획량 기준의 상호입어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되, 상호입어 허용범위를 축소 지향적으로 유도해 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새 한-일어업협정 시행 첫해인 1999년에 일본의 EEZ 내에서 범척조업 혐의로 나포된 한국어선은 20척이었고, 그 중에서 6척은 불기소처분 되었지만, 14척은 약

21,456천엔의 벌금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EEZ 내에서 범칙조업으로 인하여 나포된 일본어선은 4척으로서 모두 43,500천원의 벌금을 지불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급변한 어업질서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업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래의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 4. 多者間 漁業協力體制의 구축

한반도 주변 해역의 어장 중에서 동해, 남해, 황해의 경우는 쌍무적 어업협정에 의한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공동어장으로 개발되어 온 동중국해에 있어서는 한-중-일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 범위의 어장에 적용할 공동규범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나라 사이의 어업이익에 관한 이해관계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보유한 지역수산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sup>26)</sup> 이와 같은 새로운 체제를 통하여 지역 국가들의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각국이 협력해야 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 원칙일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실행규범」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조치가 된다.

한편, 한-중-일 세 나라가 모두 EEZ를 선포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에는 어업에 관한 한 공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협약 제63조 1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EEZ 경계왕래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국제협력이 요청된다. 즉, 경계왕래자원은 2개국 이상의 EEZ 경계를 색이-산란-월동 등의 목적으로 회유하여 왕래하는 어족자원으로서, 이 자원의 보존 및 관리는 당해 EEZ 연안국간의 합의로써 이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자원이 EEZ 경계를 넘어 타국의 EEZ로 회유해 가는 경우라도 그것의 지위는 권리 주체만 변경될 뿐 여전히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EEZ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생태계 또는 회유범위 내에서 동일 어종에 대한 TAC의 결정 및 어업관리를 국가별로 각기 달리 시행하는 것은 자원의 보존 목적상 합리적인 조치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상의 의무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63조 1항이고, 반폐쇄해 연안국들의 그 해역 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의무 이행의 근거는 제123조이다.

동중국해 어장은 동일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일 세 나라가 주로 어업에 참가하는 공동어장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새 협정체제 가동 후에는 주로 각국의 어업에 관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문제를 다룰 다자간의 협력체제로서 지역수산기구의 설립이 요청되는데, 한국이 이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 대상 어장의 범위와 어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어종에 대한 TAC의 설정 및 허용어획량의 국가별 할당문제, 공동관리의 기반이 되는 각국 어업자원 관리체제를 표준화하고 그것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문제,<sup>27)</sup> 지역수산기구를

26) 이 기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국제해양탐사이사회(ICES), 발틱해 국제수산위원회 (IBSFC),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PICES) 등을 들 수 있다.

27) 각국의 어업허가 기준으로서 효율적인 공동관리를 위하여 표준화가 요구되는 기술적인 내용을 예시하면, 어업의 명칭과 분류방식, 어업별 어선의 크기와 성능 및 어로장비, 관리 대상 어종과 어법, 어구의 규모와 망목 크기, 포획금지 채장, 금어구와 금어기 설정, 어업통계의 형식 등이다.

설립하고 그것의 조직·운영 및 규칙의 제정과 집행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결국 연안국 관할해역의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EEZ 체제 하에서는 기존의 개별 국가 어업관리제도와 더불어 관계국가들의 공동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어업자원을 공동관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 국가의 어업관리제도에 관한 이해와 신뢰가 필수적이다. 한-중-일 세 나라는 자국의 어업관리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상호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지역 어장 특성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어업공동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sup>28)</sup>

## VI. 맺 음 말

동북아지역에 있어서는 공해를 협정수역으로 하여 운영해 온 과거의 어업협정들을 EEZ 체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거나 새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공동규제수역과 같은 공해적 성격의 수역이 없어지는 대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었다.

먼저 협정의 체결국들은 자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EEZ를 갖게 되고, 타방 체결국 EEZ에의 입어문제는 相互主義原則에 기초하여 전통적 어업실적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해결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중첩수역으로서 동해의 중간수역과 제주도 남부의 중간수역, 황해와 동중국해의 잠정조치수역, 황해의 과도수역들은 당해 수역의 법적 성격에 따라 별도의 어업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즉, 공해를 협정수역으로 했던 어업협정들은 EEZ 체제에 부합될 수 없으므로 새 어업협정들은 과거의 체제나 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구상은 다음과 같다.

① EEZ 체제의 기본이념은 당해 연안국으로 하여금 그 수역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기타의 관할권 행사를 허용받은 만큼 응분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동북아 각국들은 책임 있는 EEZ 연안국으로서 적정수준의 어업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어업구조의 조정, 선진 어업관리체제의 정착, 어업자원의 증식과 해양환경의 보전과 같은 국가적 사업을 한층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② 새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국제어업분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타국의 영해를 침범하여 행하는 어업활동은 엄연한 범죄행위로서 별도의 문제이지만, 타국 EEZ 내에서의 어업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제도로써 體刑禁止原則이 유엔 해양법협약상 확립되어 있고(협약 제292조), 각 어업협정들도 이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담보금 충당을 위한 보증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선의의 경미한 범칙어업을 행한 선원이 용이하게 방면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당연한 과제이다.

③ 한국-러시아 어업관계는 1992년부터, 그리고 일본-러시아 어업관계는 1977년부터 이미 EEZ 체제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장래에 있어서도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한-중-일 세 나라의 어업관계에서 중간수역, 과

28) 王永秀·崔聖愛, “韓·中·日間 漁業管理政策의 比較와 資源共同管理에 대한 檢討”, 「수산경영론집」, 제 29권 1호, 1998.

도수역, 잠정조치수역 등의 중첩수역 운영문제와, EEZ에 대한 상호입어 허용문제 등은 어느 국가가 일방적 이익을 주장하기보다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金燦奎, “새 韓日漁業協定の 締結을 보고”, 「국제법평론」, 제 10호, 1998.
- 玉永秀·崔聖愛, “韓·中·日間 漁業管理政策의 比較와 資源共同管理에 대한 檢討”, 「수산경영논집」, 제29권 1호, 1998.
- 이상고, “신해양질서의 어업관리체제와 TAC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논집」, 제30권 1호, 1999.
- 丁海雄, “EEZ 體制와 韓日漁業協定”,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1호, 1999.
- 崔正鈞, “轉換期 韓國水産政策의 評價와 課題”, 「水産經濟研究」, 제3권 1호, 1996.
- 崔宗和, 「現代國際海洋法」, 世宗出版社(釜山), 1999.
- \_\_\_\_\_, “새 한-일어업협정의 구성과 법적 성격”, 「수산경영논집」, 제29권 2호, 1998.
- \_\_\_\_\_, “새 어업협정체제의 출범과 어업대책”,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1호, 1999.
- \_\_\_\_\_, “1965년 韓-日漁業協定の 法的·歷史的 評價”, 「水産海洋教育研究」, 제11권 2호, 1999.
- 坂元茂樹, “新韓日漁業協定の意味”,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1호, 1999.
- Jonathan I. Charney, Lewis M. Alexander,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s. I, II, III,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 Lewis M. Alexander, “Regionalism and the Law of the Sea : The Case of Semi-enclosed Se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12-2, 1974.
- \_\_\_\_\_,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Maritime Boundary Disputes Involving Korea, Japan, and China,” *Marine Policy and the Korean Economy*, The 1st Annual Korea-US Marine Policy Forum, KMI, 1998.
- Mark J. Valencia, *A Maritime Regime for Nor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Sea of Japan ; Transnational marine resource issues and possible cooperative responses,” *Marine Policy*, November 1990.
- Robin R. Churchill, “Fisheries issue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Marine Policy*, vol. 17-1, 1993.
- Tsuneo Akaha, “Fishery Relations in Northeast Asia,”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ast Asia*,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eonsei University, 1996.

**Establishment and future prospects of new international  
fisheries regime in Northeast Asian region**

Choe, Jung-Yoon · Choi, Jong-Hwa

**Abstract**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isheries agreements of the past regarding high seas as an agreement area were transformed or new agreement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However, the existing joint regulatory zone which "open" status is somewhat similar to the high sea not only disappear, but also two new systems were established. To begin with, parties of the agreement claimed their EEZs to be from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to the extent set forth, problem of the fishery access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agreement is to be solv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on recognizing of the catch results achieved in the past. In regards to the overlapping zones like neutral zone of the East Sea of Korea(Sea of Japan) and neutral zone to the south of the Cheju Island, provisional measures zones in the Yellow Sea and in the East China Sea, and transitional zone of the Yellow Sea speci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reflect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zone involved are applied. Moreover, as fisheries agreements defining open sea as an agreement zone are not able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so new fisheries agreements must be taken out from old systems and conceptions, and must be understood and enforced from the new point view. Therefore, countermeasures needed to do so should be developed, and their basic structure is as follows. Firstly, the basic concept of the EEZ regime requires that the coastal states have sovereign rights on their sea zones' natural resources and bear responsibilities appropriate to their allowed jurisdiction. Each Northeast Asian state should adjust the structure of fishing industries and employ advance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and should make efforts toward such issues of the state policy as increasing fishery resources and preserving ocean environment. Secondly,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 international fisheries disputes which are to occur under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s system. In regards to the acts of violation the fisheries laws in the foreign EEZ the principle of jail sentence prohibition is establish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very fisheries agreement reflects this principle. Therefore, the present question is to consider concrete measures to enable the easy release of the seamen, who violated fisheries laws slightly and well-intently, through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guarantee fund needed to make collateral reasonable.

Thirdly, Korean-Russian and Russian-Japanese fisheries relations were formed on the basis of the EEZ regime, since 1992 and 1977 respectively, and are expected to maintain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character. As for Korean-Chinese-Japanese fisheries relations, the operational problems of overlapping zones, and problem of the permits for EEZ mutual access should be solv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equity rather than unilaterally from any side.